

2016. 1.

전주시 · 전주주조

『전주모주 상표 · 서비스표 사용권』
계 약 서



전 주 시
(주)전 주 주 조

제1조(계약서 표시) 상표법 제 57조 규정에 따라 전주모주 상표 · 서비스표 사용에 관하여 상표 · 서비스표권자(시장)을 "갑"이라 하고, 사용자(생산업체 : (주)전주주조)를 "을"이라 하여 통상사용권을 체결하고 다음사항을 계약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조건) ①“을”과의 상표 · 서비스표 계약기간은 2015년 1월 1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며, 계속 사용하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상표 · 서비스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체결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그 대상은 일반형 전주모주 · 라모주 · 음료형 모주등 보조금으로 시설한 전주주조에서 생산한 모주에 한하며 전주주조에서 국내외에 위탁 또는 컨소시엄으로 모주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매출액은 포함한다. 다만, 서비스표는 무상으로 사용한다(제품외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표로 한다)

나. 모주 원주개발 · 기호성 모주 연구개발 등 특허받은 연구개발 제조법에 의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다. “을”은 전주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 한다. 다만, 전주 농산물을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내 및 국내산으로만 사용한다.

라. “을”은 모주제조를 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

마. “갑”은 “을” 이외 업체와 전용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제3조(상표표기) “을”은 “갑”으로부터 통상사용권이 체결된 별표 1의 상표를 생산제품 포장지(용기)에 표기, 유통시켜야 한다.

제4조(표시방법) 상표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상표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 ②상표는 납품 또는 소비자에게 판단하는 제품의 판매 단위별 용기,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③상표는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면적은 용기에 식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④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를 사용하여 컬러로 표기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특례)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칼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 할 때에는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하되 떨어지지 않게 부착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교하고, 규격에 맞게 인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표 사용의 범위 및 관리) ①상표는 "을" 업체에서 생산하는 완제품으로 한정한다. 단, 컨소시엄등 업체와 연계 생산시 컨소시엄등의 업체의 매출액도 포함되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 또는 "을"의 직영점 등이 모주의 원재료에 상표를 붙여 원재료를 별도로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갑"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지)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① 계약조건 위반 및 계속기간 만료 시
- ② "을"이 자진 폐업 시
- ③ 제품생산 및 유통과정에 있어서 국내외 명품화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 했을 때
- ④ 기타 "갑"과 "을" 이 상호협의 하여 해지 시

제8조(사용료) "을"은 계약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갑"에게 다음과 같은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을"은 완제품 또는 원재료별 개별제품에 대한 사용료로 공장도판 매가(출고가)의 1000분의 10의 사용료를 납부한다. ② 사용료 납입은

익월 15일까지 "갑"의 시금고 등에 입금하며, 15일이 공휴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입금한다.

제9조(관련서류제출) "을"은 매월 판매 생산량 및 개별제품 공장도판매 매출액, 제품생산에 대한 관계 자료를 분기별 말월 매10일까지 "갑"에게 제출(FAX 제출가능)하여야 하며, "갑"이 관계 자료를 열람 또는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갑"은 "을"이 계약서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적 손실보전으로 1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11조(기타) 이 계약 이외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타인승인사항) 위와 같이 상표에 대하여 통상사용권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사용권자 (주)전주주조는 상표권자(전주시장)가 타인에게 사용권을 승인할 경우는 아래조건을 준수 및 책임 질 것을 조건으로 계약한다.

- ① 사용권자는 타인에게 사용을 사용하게 할 경우 사용료 매출액의 1000분의 10을 전주시에 납부와 지켜야할 제반 준수사항을 준수한다
- ② 사용권자가 타인에게 사용권을 사용하게 할 경우는 반드시 상표권자(전주시장)에게 사전에 사용권승인을 받아 사용권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서)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각각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 전 주 시 시장 김승수 (직인)

을 : (주)전주주조 회장 김재익 (직인)

2016년 1월 일

(별표1)

전주모주 상표

전주모주 일반형 상표	
라모주 상표	

